

##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

제정 2007. 6. 21 조례 제2056호  
전부개정 2009. 11. 12 조례 제2234호  
일부개정 2018. 7. 12 조례 제2962호  
일부개정 2019. 11. 15 조례 제3145호(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8. 7. 12>

제2조(기능)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8. 7. 12>

1. 가정문제의 예방·상담 및 개선
2.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
3. 건강가정 교육(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)
4.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
5.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
6.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성별을 포함한 실태파악
7.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

제3조(시설 등)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2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는데 필요한 교육실, 상담실, 자료실,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휴게시설 등의 공간을 마련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18. 7. 12>

제4조(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)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」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7. 12>

②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8. 7. 12>

③ 센터의 종사자는 최소 4명 이상의 상근자로 하여야 하며 「건강가정기본

법」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.

④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7. 12>

⑤ 센터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 <신설 2018. 7. 12, 개정 2019. 11. 15>

⑥ 그 밖에 센터의 조직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 <개정 2018. 7. 12>

제5조(센터장의 임명 등) ① 시장은 센터장을 건강가정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임명하거나 건강가정지원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겸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7. 12>

② 센터장을 전문가로 임명할 경우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

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센터장을 임명한다.

제6조(센터의 지원)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)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

② 센터장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7. 12>

③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·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7. 12>

④ 센터장은 수입·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8조(자원봉사자) ① 센터장은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.

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,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.

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강사) ① 센터장은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

관련 분야의 강사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주민참여 등)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·반영하여야 한다.

제11조(지도감독 등)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확인·점검하게 할 수 있다.

부칙 <2009. 11. 12 조례 제2234호 전부개정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7. 12 조례 제296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11. 15 조례 제3145호,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생략

② 「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5항 중 “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”를 “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”로 한다.

③ 부터 ④ 까지 생략

